

다함께돌봄센터(위례복합체육시설)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20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(위례복합체육시설) 관리·운영

2.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(위탁계획)
- 「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운영)
- 보건복지부 지침 「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」

○ 추진 필요성

- 다함께돌봄센터(위례복합체육시설)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돌봄환경과 지역중심의 돌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.

3. 위탁사무 내용

○ 이용 아동 관리

- 아동 권리 보장 및 권리교육,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
- 급·간식 제공, 등록 및 출결 관리, 돌봄서비스 연계, 돌봄서비스 제공

○ 돌봄 프로그램 운영

- 기본서비스 : 출결 확인, 급·간식 지원 등
- 공통프로그램 : 놀이, 휴식, 신체 활동, 숙제 지도, 아동 지원 등
- 특별 활동 프로그램 : 언어활동, 예체능, 과학, 체험활동 등

○ 종사자 관리

- 종사자 자격 기준 확인 및 공개모집에 의한 종사자 채용, 종사자 복무규정 마련, 종사자 교육 안내

○ 위생·안전 관리

-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, 급식 관리, 위생관리, 안전교육,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수립, 시설 안전 점검, 보험 가입

○ 시설 운영 관리

- 시설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운영 규정 수립, 각종 사업계획 수립

○ 재무회계 관리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예산, 결산, 회계, 물품관리, 후원금 관리

○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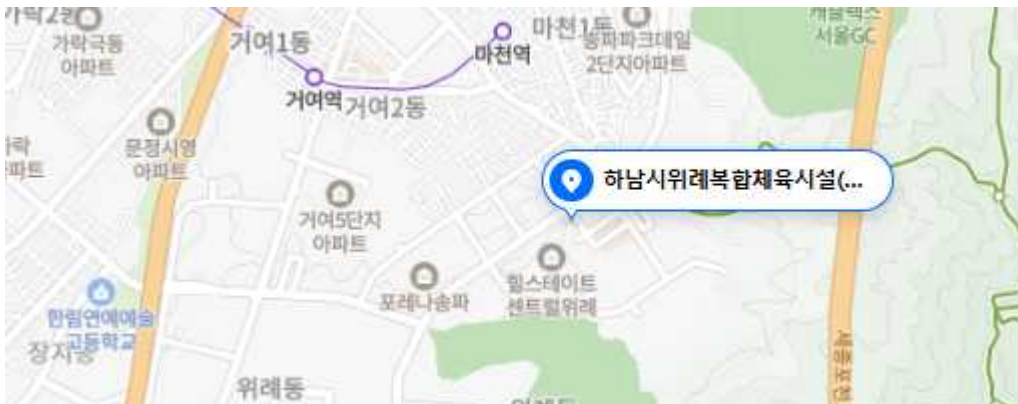
-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, 관련 서식을 활용한 문서 작성 및 관리

4. 위탁시설 개요

○ 개요

시설명	소재지	면적	정원	종사자	위·수탁기간
다함께돌봄센터 (위례복합체육시설)	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9번지	261.98㎡	33명	4명	2026. 3. ~ 2031. 2.

○ 위치도



5. 위탁기간 : 2026. 3. ~ 2031. 2. (5년)

6. 수탁자 선정방식

-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민간단체
- 선정방식 : 공개모집,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
 - 위원구성 :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9인 이하
 -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함

구분	총점	정량평가(40)		정성평가(60)		
영역	100	운영체의 공신력(27)	시설장의 전문성(13)	운영계획 (40)	운영의지 (10)	지역발전 기여도 (10)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예산지원 : 215,889천원 [균 115,478천원 도 41,519천원 시 58,892천원]

(기준: 2026년)

사업명	예산액	산출내역
계	215,889천원	
설치비 지원	75,000천원	· 75,000천원*1식=75,000천원
기자재비 지원	30,000천원	· 30,000천원*1식=30,000천원
운영비 지원	18,000천원	· 운영비 : 2,000천원*9월=18,000천원
인건비 지원	71,955천원	· 시설장 : 3,342천원*1명*9월=30,078천원 · 전일제 돌봄교사 : 3,102천원*1명*9월=27,918천원 · 시간제 돌봄교사 : 1,551천원*1명*9월=13,959천원
인건비 추가지원	4,245천원	· 명절수당 : 3,538천원*1식=3,538천원 · 명절수당 4대보험 및 퇴직연금 : 3538천원*0.2=707천원
프로그램비 지원	1,800천원	· 프로그램비 : 200천원*9월=1,800천원
돌봄인력 지원	14,889천원	· 급여 : 1,551천원*1명*9월=13,959천원 · 명절수당 : 930천원*1식=930천원

8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다함께돌봄센터 관리, 운영 사무의 경우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 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③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**
- 또한,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방식은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을 예방하며 서비스 공급시장의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
- 따라서,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분석 결과 공공성(2)에 비해 효율성(5)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하기에 **위탁(공모) 추진함**

분석기준	분석내용	결과	비고	
공공성	㉠ 서비스 중요성	·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	· 높음	· 초등학교 방과 후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경감
	㉡ 서비스 수혜대상	· 한정적인 주민인지,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	· 낮음	· 센터 인근 주민 등 한정적 주민
	㉢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	·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, 중단가능성,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	· 보통	· 위탁기간 5년으로 재위탁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 가능
	㉣ 서비스 중단 파급효과	·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,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	· 높음	· 초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큼
효율성	㉤ 민간의 전문성 활용	·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,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	· 높음	· 관련 자격증 소지한 초등돌봄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
	㉦ 경제적 효율성	·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, 조직 확대 방지, 비용절감(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) 정도 등	· 높음	· 민간위탁에 따른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및 자부담, 후원금 등 기타 세입 충당을 통해 시 예산 절감 가능
	㉧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	· 공급 목표, 사업계획의 합리성,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	· 높음	· 추진실적 확인 및 만족도 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
	㉨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	·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, 서비스 공급 시장 구조(경쟁, 독과점),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	· 높음	· 수탁자 선정을 위한 법인/단체 간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	㉩ 관리운영의 투명성	·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 가능성,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	· 높음	·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선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

※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.10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(안) 참고

관련 법령 및 조례

1 사회복지사업법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5. 4. 23.] [법률 제20508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) 044-202-3014

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자원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8

제3장 사회복지시설 <개정 2011. 8. 4.>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 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부칙 <제20883호, 2025. 4. 1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5. 3. 11.] [보건복지부령 제1096호, 2025. 3. 11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) 044-202-3014

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자원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8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. 3.>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3 아동복지법

아동복지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85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아동복지정책과 - 총괄) 044-202-3415

보건복지부(아동학대대응과 - 아동학대, 취업제한) 044-202-3381, 3388

보건복지부(아동권리과 - 아동복지시설) 044-202-3432, 3437

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

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<신설 2019. 1. 15.>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4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(제정) 2001.04.16 조례 제609호

(전부개정) 2019.10.01 조례 제1716호

(일부개정) 2021.01.12 조례 제1879호

(일부개정) 2021.03.12 조례 제1900호 타 조례개정

(일부개정) 2023.05.01 조례 제2168호

제6조(위탁계획)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
1. 목적, 필요성, 위탁기간 및 조건
2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3. 보조 및 지원예산
4. 추진방법 및 일정
5. 기대효과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. <본조신설 2023.5.1.>

5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(제정) 2018.12.27 조례 제1616호

(일부개정) 2019.09.03 조례 제1697호

(일부개정) 2021.03.12 조례 제1900호 타 조례개정

(일부개정) 2023.11.23 조례 제2247호

제6조(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·운영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3.>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3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(별지 2호 서식)
2.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
3.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)
4. 삭제<2019.9.3.>
5. 다함께돌봄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“이라 한다)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

는 서류

6.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(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)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센터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9.3.>

1. 이용 아동의 급·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

2.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9.3.>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⑦ 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9.3.>